

주주님께

제 66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 조 및 당사 정관 제 19 조의 규정에 의거 제 66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기주주총회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 542 조의 4, 당사 정관 제 21 조의 2 에 의하여 금감원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1.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요일) 오후 2시
2. 장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2(충무로 4가) 당사 극장, 3층 4관
3. 회의 목적 사항
 -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나.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제 66 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결손금처리계산서(안) 포함)
 -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 1)
 - 제 3 호 의안 : 이사 재선임의 건(별첨 2)
 -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6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및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daehancinema.co.kr)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실물증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에 등록되어, 실물증권 소지 주주가 실물증권을 제출하거나 해당 주주의 권리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명의개서 대행회사인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가. 상법시행령 제 31 조(주주총회소집공고) 제 4 항 제 4 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 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www.daehancinema.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기념품이나 답례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세 기 상 사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조영준(직인생략)

(#첨부 1)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p>제 10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p> <p>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상법 제 542 조의 8 의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제 6 호의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p>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p>부칙(2022.03.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정관은 제 65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승인된 내부거래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관련규정은 이 정관 제 42 조의 2 에 따른 것으로 본다. 	<p>부칙(2023.03.30)</p> <p>이 정관은 제 66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p>

(#첨부 2)

제 3 호 의안 : 이사 재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 여부,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신규 선임 여부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서형석	1965.07.20	사내이사	재선임	前우양산업개발(주)부장 現세기상사(주)이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기아	1980.09.12	사내이사	재선임	現(주)우양네트웍스 이사 現세기상사(주)이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 관계회사의 임원
임영욱	1969.12.20	사외이사	재선임	공인회계사 前대주회계법인 회계사 前정동회계법인 이사 現성현회계법인 상무이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서형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기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영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